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19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11. 26(금) 14:10 ~ 16:57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박경주 위 원
유은선 위 원
이시백 위 원
이원재 위 원
이진희 위 원
장인주 위 원
전고필 위 원
정유란 위 원
정정숙 위 원
정종열 위 원
홍태림 위 원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제31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회 예술가의 집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한 8인의 위원님과 상임감사님 그리고 회의를 함께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다른 직원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와 같이 사무처 직원들도 영상회의를 통해 참관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회의의 성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12인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박경주 위원님과 이진희 위원님께서는 아직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는 50분 정도 늦게 참석을 하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예, 접속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시는 대로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회의에는 김선욱 노조위원장이 함께 회의를 참관하고 있고요. 지원총괄부의 전희영 차장 등 11명의 사무처 직원이 안건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에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전차(前次)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318차 전체회의에서는 2건의 의결안건이 모두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전차(前次) 회의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총 3건의 의결사항과 7건의 보고사항이 회의에 제출되어 있고요. 이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논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규정 개정의 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의 건, 2022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기본계획(안) 등 3건의 의결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보수규정 개정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건은 강성규 인재성장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예, 나주 회의실에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8페이지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보수규정의 제2조에서 기타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학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2조에 '자녀학비보조금'과 관련한 세부 내용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간략하게 보고가 되었고요. 제가 요약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초·중학교에만 적용하던 무상교육이 2022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위원회 규정이 가지고 있었던 고등학교 학비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당 부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접속한 분들도 계셔서 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반대가 없고 전원 찬성을 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건은 송시경 본부장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얼마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준화 부장이 지원총괄부장으로 왔고요. 이종국 부장이 그 자리로 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쪽입니다. 안건번호 제914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의 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권고사항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실제로는 2022년 5월 19일에 시행이 됩니다. 제2조제5호 직무관련자 또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따른 제척, 회피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제2항 중에서 바뀌는 부분은 사무처 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1인으로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5인에서 20인 내외의 심의위원으로 바꾸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같은 경우 각 장르별로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등 5명씩 하고 통합심의를 하면 20인 정도로 같기 때문에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심의위원 때문에 있었던 ‘직원’ 이 부분을 사실상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빼는 부분으로 해서 고쳤습니다.
다음은 제7조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제7조제2항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괄호 열고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공무원 제외”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쉽게 보면 문체부의 본청은 안 되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면 큐레이터들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내년도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되어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폭넓게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또 모든 공무원이 해당될 수는 없고요. 기타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신나는 예술여행과 같은 순회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나 행안부와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문체부 본청 공무원은 안 되고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공무원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8조입니다. 제8조에는 “해당함에도 고의로”에서 ‘불구하고’를 넣고요.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보다는 “심의에 참여한 경우”로 해서 능동적으로 바꾼 규정이 되겠습니다. 문구 수정입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인데요. 제9조의 취지는 기존의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한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보면 이해충돌을 직접적으로 보는 부분을 가족으로 한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친족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가족으로 한정하면서 친족은 회피사유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제9조제3항에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해당 심의위원에서 제척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척은 원래 신고가 있건 없건 간에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상 회피라고 하면 스스로가 빠지는 것이

고요. 기피는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 지원신청자가 “저 사람이 심의위원을 하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못 받고 이 사람한테 갈 겁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건데요. 예술위원회에서 기피제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이 제척과 회피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하고요. 다음페이지인 12페이지의 제1호를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777조가 있었습니다. 제777조는 소위 말하는 친족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되어 있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요즘은 4촌도 힘들고 특히 인척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힘들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라 회피 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도 친족이 아니라 제779조에 의한 가족만 얘기하고 있어서 가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심의대상 사업의 주체 대표자나 직원은 아니고 임원인 경우로 한정하고요. 2호에 보면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를 넣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범위인 가족으로만 하고 기존의 친족은 뒤쪽으로 뺐습니다. 그다음에 5호인데요. 회피신고도 하면서 회피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심의위원이 2년 전에 재직을 해서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 신청 주체인 경우라든지 심의위원이 2년 안쪽으로 대리하거나 고문이나 자문을 한 단체가 신청한 경우. 그리고 3호처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인데요.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친족 부분을 포함해서 주관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얘기가 없지만 뒤의 별지2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구체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호를 보시면 거의 그대로인데요. 어쨌든 제척되었거나 회피된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제적위원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제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제척은 전체 사업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 어떤 사람이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제척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해당사업에 대한 취소는 물론이고 전체 심의했던 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다시 매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효력으로는 기존에 있듯이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지만 재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어쨌든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심의가 끝나고 알았을 때 해당 심의위원을 배제하고 재심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여지를 둔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조금 더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현재 지금까지 제도로 해 왔고 2022년도 사업에 들어가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오늘 얘기해 주시면 2차적으로 작업을 할 요량으로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사업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금 발전적인 모습으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여기에서 “지원대상단체(개인)” 이 부분을 “지원대상인(단체)” 이렇게 문구를 통일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심의평균평점을 공개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선정의 커트라인과 심의평균평점을 같이 공개하는 식으로 해서 커트라인도 공개하겠다는 부분입니다. 2항에 보시면 무기명의 주요 의사결정 위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과 영상녹음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정공고 14일 이내에 옴부즈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옴부즈만이 끝나면 바로 폐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국정감사에서 어떤 건이 제기되면서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3쪽의 참여동의서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똑같은 내용이고요. 14쪽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파란 글씨로 해서 제척사유를 넣었는데요. 3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시면 “밀접

한 관련”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제척 말고 회피로 온다고 했는데요. 괄호안에 풀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개인적인 친분, 직장동료, 친인척 관계, 사제지간, 공동작업 관계 등” 이렇게 해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렇게 개정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부장의 보고 중인 2시 18분에 박경주 위원이 참석하셔서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 18분 박경주 위원 참석)

박종관 위원장 : 이 건에 대해서 본부장의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논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11페이지의 제7조제2항제4호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있을 텐데요. 표현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공무원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공고사항에는 감독기관 공무원의 참여금지잖아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이원재 위원 :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소속기관과 관련기관 공무원 제외도 애매한 조항인 것 같거든요. 본 조직 말고 공무원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이렇게 기술될 필요가 있나? 원래 취지에 맞게 기술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서요. 그냥 “감독기관 관련 공무원” 이런 식으로 고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체부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만이 아닌 것 같고요. 감독기관이나 지휘선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조항이니까 그렇게 기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공무원 제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용어상으로 보면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법조문대로 한다면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공무원은 모두 제외된다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이 있으면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고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은선 위원 : 본부장님께서 현대미술관 얘기를 하신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악 같은 경우에도 국악원에 있는 공무원은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해서 문구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법률에 관한 것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금지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만 오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것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박종관 위원장 :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을 요약하자면 현재 있는 개정(안) 문구로는 국민권익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

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안을 같이 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문구의 문제라면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감사님이나 사무처에서 고민한 것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독기관이라 함은 우리가 재단법인의 성격도 갖는데요. 그 법인의 감독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무원 전체로 고민을 했다가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쪽의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할 여지가 있어서 여지를 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한예종 등 이런 쪽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어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면 해당되는 기관을 쭉 나열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소속기관에 파견되어 있거나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라면 그분들이 꼭 심사에 들어가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예종 교수 등 공무원 직위에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심의위원 풀에 공무원이 굳이 참여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를 들어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심의할 때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원재 위원 : 공무원 자체는 아니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예술종합학교의 교수는 공무원이죠.

유은선 위원 : 실제로 국악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적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고 연구직 공무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소속기관에 내려가 있는 일반, 물론 그런 분들도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애매한 것이죠. 한예종도 마찬가지고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외를 두고 싶은 분이 한예종 교수님이라든지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인데요. 그러면 문화예술관련 전문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식으로 해도 된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구를 다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원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직 및 연구직 공무원은 제외)” 이렇게 하면 될까요?

유은선 위원 : 그런데 또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기는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참 애매하기는 해요.

이원재 위원 : 유은선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저는 거기에서 아까 말한 전문직 공무원이 아닌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은 배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좋은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으시지만 굳이 그분들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공무원 중에 전문성을 가진"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거나 바뀌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즉시 문구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말씀을 해 주시죠.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그러면 "문화예술분야 전문직 공무원은 제외"라는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유은선 위원 : 예.

이원재 위원 : 예,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하면, 원안의 제7조제4항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문화예술전문직 공무원 제외)"라고 수정안이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동의를 하시면 일단 논의를 종결하고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희 전략사업본부장 : 죄송합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의 제9조제3항제1호에 보시면 "심의위원 자신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심의대상사업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라고 해서 신청주체가 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가 있어서요. "신청주체이거나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저는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윤희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개인이나 단체는 대표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윤희 전략사업본부장 : "또는 임원"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경우인데요. 개인의 임원인 경우가 애매하게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베니스 비엔날레 심의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신청주체가 단체와 개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해석할 때, 예를 들면 신청주체는 문학 같은 경우 개인인 경우도 있고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대표자니까 들어올 것이고요. 단체 같은 경우에도 대표자로 해서 들어올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또는 임원"이라고 하면 개인은 고려할 필요가 없이 단체의

임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취지는 모두 반영되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아니라면 문구를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전략사업본부장 : 예, "신청주체이거나" 그러면 개인은 이 신청주체에 다 포함이 됩니다.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송시경 본부장이 설명한 대로 개정안의 제9조제3항제1조에 심의위원 자신 또는 민법 등으로 해서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신청주체 대표자 또는 개인, 임원인 경우"라고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송시경 본부장께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라면 원안을 그렇게 수정하여 오해를 없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논란의 소지는 명확한 게 좋거든요.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베니스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드러내도록 규정을 개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그러면 최종적으로 '신청주체이거나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회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제9조제6항에 "제척되었거나 회피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척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회피한 심의위원이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심의위원이 '가'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관여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전에 알아서 회피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이 5명이면 A라고 하는 심의위원을 빼고 4명이 한 점수로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이해했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5명이 심의를 했으면 그중에 1명이 제척사유라면 전체 사업에 대해서 4명이 심사한 점수만 반영하는 것이고요. 회피인 경우에는 5명이 심사를 했을 때 '가'라는 사업에 대해서만 4명이 심사한 것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태림 위원 : 제가 이것만 보니까 심의위원 명단에서 회피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아예 명단에서 빠지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여쭤본 것인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해당 사업만이고요. 다만, 문제는 제척입니다.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작년에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난 다음에 제척에 대해서 빠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게 되면 순위가 변동될 사유가 있어서요. 저희들 실무선에서 제척이 될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을 배제한 후 재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는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야만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내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지금 제9조제3항제1호가 혼돈이 될 것 같아서요. 여기에 보시면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임원’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혼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민법과 상법상에서 ‘임원’은 등기이사 또는 이사가 아니더라도 상임이사나 전무이사처럼 임원에 준하는 분들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혼돈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규정은 아니라도 별도의 기준점은 잡고 가셔야 나중에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남요원 감사 : 감사실장의 얘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베니스비엔날레를 이윤희 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임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인천문화재단의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참여했던 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규정에서 임원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이후에 논란의 범위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임원의 범위에 대해 혹시 논의되어 개념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개념을 이야기 해 주시고요. 만약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예술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디까지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적시되어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취지는 알겠고요.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서요. 물론 지금까지도 규정으로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진전된 부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이렇게 가고요. 감사님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구로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2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은 이 부분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여기에서 표현이 법적 용어, “신청주체 그리고 신청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청단체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으로서의 단체가 있을 수 있고 비법인 형태의 일반적인 예술단체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자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임원이라고 했을 때는 법인이 설립할 때 임원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할 때 임원은 법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그 부분을 포함해서 비영리단체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굳이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던 단체들처럼 실체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모여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민법이나 상법처럼 등기임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석을 하면서 신청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의결을 해야 하니까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정리를 하자면, 앞부분의 제7조제4항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문구까지 합의한 것으로 하고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제9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박경주 위원도 문자로 의견을 내셨는데요. “신청주체 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 임원인 경우”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 논의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규정이 이야기하는 임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임원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정에 다 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남요원 감사 : 규정에서는 이 정도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사 기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의 기준에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남요원 감사 : 그리고 옴부즈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법인, 비법인, 특히 우리 문화예술단체의 생태계라는 것이 그냥 사업자를 내서 같이 프로젝트로 참여를 했다가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면 내부 투서를 작성하는 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심사집행기관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례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적용하는 구체적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받아 들여 주시고요. 우리 송시경 본부장님 이하 부서에서 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세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담당 부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말씀하신 내용에 모두 동의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감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오늘 의결해 주신 부분은 기본규정에 해당하는 지원심의운영규정이고요. 하부 단위의 지침이 있고 실무 단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3단계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서 하부 단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정상 ‘임원’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희도 민법상으

로도 검토를 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법을 그대로 끌어올 때 예술단체의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심의를 할 경우를 생각하면요. 잘 아시듯이 협·단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규정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부 단위의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의결을 내는 자리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회피와 달리 제척은 심의 전체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규정하는 가족이라든지 그야말로 직접적인 대표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확대를 할 때 저희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요원 감사 : 황 부장님, 지금 현재 지원총괄부장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실과 상의를 하세요. 최근에 옴부즈만이 어떻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고요. 그러니까 민법상으로 '임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779조라는 법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계의 전체 생태계를 보면 민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양상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옴부즈만에서 제기될 때는 그런 법들로 제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인천문화재단의 그분들이 과연 임원인가? 임원이 아닌 분들이라는 말이죠. 임원이 아닌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척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단위에서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기본규정을 쌓는 것이니까요. 대신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무선에서 최소한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우리의 심사규정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보고해 주시라는 겁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진수 부장이 실무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토로한 것인데요. 지금의 의결이 황진수 부장이 예상하고 있는 어려움의 범위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감사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규정을 심의했던 것이고요. 이 심의의 취지는 직원들이 실제 심의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척과 회피 사유에 대한 대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기본취지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황진수 부장이 얘기하는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친족 제777조를 제779조로 범위를 더 명확하게 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예술계의 현실을 반영해서 상위법의 원칙을

지키되 우리 예술계의 실정에 맞게 범위를 현실화 시켰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희 본부장이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이었을 것 아닙니까?

이윤희 전략사업본부장 : 예, 말씀하신 그대로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은 사실 제척사유 자체가 더 넓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더 좁고 명확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황진수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심의 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좁게 했고요. 그 나머지는 회피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여기까지 논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추가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논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원안에서 제7조제2항제4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예술관련 공무원 제외)”라고 문구를 수정하고요. 12쪽의 제9조제3항제1호을 “신청주체 개인 또는 단체대표자, 임원인 경우”라고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구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정리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견이 없으시면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해주셔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사인을 주셔야 합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 정도가 되었는데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정회 상태인 15시 1분에 이진희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시 01분 이진희 위원 회의참석)

박종관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결안건은 2022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본 의결안건은 황진수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신 사전의견서에 대해서도 연이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안건번호 915호 2022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기본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제315차 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 관련 안건으로 검토 되어서 의결했었는데요. 그때 조건으로 한번 더 성과분석 및 자문을 거친 다음에 안을 확정하고 의결을 받아서 공고 하도록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과분석을 거치고 자문을 거쳐서 그 내용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현재 경과 내용은 큰 변화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2020년과 2021년 사업수행단체들이 자기 사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홍태림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박경주 위원님이 참여해 주셨고요. 2020년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두 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작년 9월에도 저희 사업의 정체성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2022년도 사업의 목적을 공공의 문제에 대한 예술 활동 지원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는 표현을 쓰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한번 더 포지셔닝을 강화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시기를 작년부터 올해 6~7월까지 가서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022년은 오늘 의결되면 바로 12월에 공고를 올려서 3월에는 결과를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3~4개월 정도 앞당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이 2020년도에 불용이 좀 있는 바람에 지금 현재 조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35억에서 32.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용역·운영비가 올해 기준 6억에서 내년 1억으로 대규모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의 재원이 직간접적으로 건축물미술작품 출연금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건수와 출연금액 기준을 봤을 때 2021년 11월 기준으로 딱 맞출 수는 없고 최소 30% 이상은 비수도권 사업을 선정하겠다. 그래서 지역균형 제도에 부합하겠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예산은 32억 5,0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사업운영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크게 사업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 공공예술 사업지원과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포털이라든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를 통해서 적립된 돈은 526억 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서 저희가 일부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개년 자율실행형은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민간단체는 최대한 지원규모를 유지하되 광역이나 기초문화재단 같이 공공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0%를 줄여서 지원하는 차등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 항목에 영유아 돌봄비, 배리어프리 환경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허용했고요. 필요한 경우 국외여비도 편성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담심의위원제로 운영할 것이고요. 심의방식은 1차 서류, 2차 인터뷰심의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중지원 총량제한으로 3억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제외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지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부담조건도 이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유지하

고자 합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의결이 되면 저희가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중에 심사를 해서 3월에 발표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예산집행계획(안)이나 공고문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시작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작년에 '기후시민3.5'라는 사업이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요. 추정치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1,300만 명에게 노출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계돼서 했던 '기후미술관' 이라는 사업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쾌거도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태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과보고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같은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성과들이 공유되고 토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담당 부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이어서 박경주 위원과 홍태림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표사업이라고 할 만큼 성과가 충분히 견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과 예산과 관련되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연이어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로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회의자료 18쪽 하단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문예기금 출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지역최소보장제를 적용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심의를 진행할 때 일정 심의평가 점수 이상일 경우에 30% 이상을 비수도권 사업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정 심의평가 점수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심의평가 점수를 합의해서 도출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저희가 통상 60점 이상을 과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심의위원들께서 최소보장제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해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60점 이하로 과락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이 되셨나요?

홍태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저는 여기 계획에서 관리활용형이라는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취지나 사업 내용은 되게 좋은데 큰 트랙의 명칭이 관리활용형이라고 하니까 어감과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명칭을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내용은 광역기초재단과 진행하는 것이고 지역문화 생태계와 관련된 협력형일텐데요. 그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도 잘 전달이 안 되고 '관리', '활용' 두 단어 모두 좀 부정적이라서요.

박종관 위원장 :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그러면 의견을 조금 더 주시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활용형'이라고 해서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작품들을 관계된 기관이 잘 관리해서 활용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 건축물미술작품으로 거둬진 돈이 지역으로 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이원재 위원 : 혹시 '지역협력형'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저는 뜻도 정확하고 내용도 맞는 것 같은데요. '지역협력형'이라고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전고필 위원 : '지속활용형'은 어떻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지속활용형'이요. '지역협력형', '지속활용형'.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말고요. 그런 의미로 '관리활용형' 보다는 어느 경우에도 나아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숙기해서 사업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그리고 '주제발전형'도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주제심화형'이 원래 이 사업 설계의 취지와 맞다고 봅니다. 내용은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만 제안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런 것들도 손을 봐야 하는데요.

이원재 위원 : 그래서 용어를 조금 손을 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사실 용어를 만드는 것까지 사무처에 그냥 일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그냥 의견으로 드린 것으로 앞에 것은 '지역협력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발전형'은 '주제심화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의견은 '지역협력형'과 '심화형'이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주제발전형'을 '주제심화형'으로 바꾸는 것은 더 좋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데요. '관리활용형'을 만약 '지역협력형'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지금 '관리활용

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내용 외에 지역에서 공공예술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든지 뭔가를 만든다는 것까지 포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태림 위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정한 대상사업에 플러스알파로 조금 더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의견을 드리면 저도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 '지역협력형'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사업유형 4가지가 모두 광역·기초문화재단 등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상 지역이라고 하면 수도권을 빼고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울도 지역이라는 말도 하지만 통상 수도권을 빼고 지역인데 수도권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속관리형' 혹은 '지속활용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한 가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초에 공공예술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쪽과 권익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 모단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고발조치가 돼서 저희도 수사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금액 단위가 높다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옴부즈만이나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보니까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는데요.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사업 검증 과정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 단체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다른 사업명으로 하고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고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저희 예술위에도 똑같은 내용에서 약간 변형된 구조로 지원신청을 해서 교부 결정이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사업을 심사하다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전·사후에 검증이나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좋은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부분은 별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세부 사업의 사업명과 관련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듣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지역협력형'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그런데 헷갈린 게 '관리활용형'이 공공미술 관련된 것만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아예 그 명칭을 넣는 것은 부담이 되나요?

박종관 위원장 : 정확한 의미는 공공미술작품 관리 개선인 것이죠.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그러면 실무 부장의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제심화형'은 저희도 굉장히 좋은 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맞고요. 주제를 심화해서 가는 것이라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활용형'도 말씀해 주신 '지속활용형'이라는 말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의 공공미술작품도 포함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지속활용형'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의 방식들은 내년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 대안을 내고 위원회와 환류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또 지금 감사실장이 문제 제기한 규모가 사업이니까 지원심의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과정에서의 객관적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과정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억, 3억, 1억 등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총액 규모 등을 정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절차가 있었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따로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 성과보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규모가 크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엄격하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0억이 불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크고 단순하게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단, 세부적인 내용이나 절차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대표사업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틀 같은 경우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박경주 위원으로부터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자랑삼아서 상을 받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점도 위원회에 알려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범위나 사업 설계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담당 부장께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공공예술사업 지원은 조만간 공고가 나가야 할 상황이라서요. 얘기가 된 '관리활용형'을 '지속활용형'으로 그리고 '주제발전형'을 '주제심화형'으로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19쪽의 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는 4가지 유형 중에서 명칭에 있어서 논의가 된 '관리활용형'을 '지속활용형'으로 하고 '주제발전형'을 '주제심화형'으로 바꾸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이견이 없으시면 담당 본부장의 의견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공공예술사업 지원의 세부 사업 유형을 '관리활용형'을 '지속활용형'으로 '주제발전형'을 '주제심화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을 포함한 수정한 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해서 의결안건 3건을 모두 결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7개의 보고사항이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은 2021년 예술로 기록사업 심의 결과보고입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보고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는 별도의 지원심의결과라고 하는 묶음으로 문건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를 마치면 서면으로 받은 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술로 기록사업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의결사항인데요. 심의가 지난 수요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결자료를 준비하는데 부랴부랴 서둘러서 하기는 했지만 전달되는 자료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저희가 오늘은 보고를 드리고 서면을 통해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업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0억이 배정되었고요. 그중에 분야별로 문학 20억, 시각예술 6억, 공연예술 14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원심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전담심의제를 채택해서 진행을 했고요. 장르별로 심의를 진행했고 전수검토, 온라인 채점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보시면 코로나19 재난 기록 상황에 대한 기록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제별·대상별·콘텐츠 형식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요. 그래서 동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서 안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 주제, 콘텐츠 형식, 기록 대상, 사업장소, 사업주체로 봤고요. 심의기준은 뒤에 나오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인데요. 신청건수가 3,038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지원신청액은 172억 규모고 예산이 40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976건을 선정했고 지원비율은 32.1%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지원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설정해서 진행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결정된 내용을 보면 신청비율에 비해서 약간 높은 40.3% 정도가 비수도권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향후 일정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서면의결을 29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의결이 된다면 발표를 11월 30일에 하고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성과물 보존과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보다 별첨 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별첨1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첨1 자료의 붙임1을 보시면 전담심의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의견 중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원 분야가 별도로 모집되지 않았고 인접 분야에 신청을 하라고 공지는 했으나 전담심의위원에 다원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의결할 때 다원을 별도의 분야로 분류해서 진행하지 않고 문학, 시각, 공연예술 중에 선택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각 분야의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 안에 다원 또는 융복합 분야의 신청사업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거기에 편성된 내용을 보시면 각 장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융복합이나 다원적 성격의 프로젝트들을 검토하실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붙임4를 보시면 심의분석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과 팀으로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선정된 내용을 보니까 71% 정도가 개인이 선정되었고 팀은 28.9%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선정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사업주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 교육, 가정, 여가, 방역, 의료, 지역사회.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제한되어 신청된 내용이 아니라 두루 다양한 주변의 이웃이나 지역사회 대상들을 포착하고 그렇게 기록화 하겠다는 계획들이 다양하게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형식을 보면 영상 12.3%, 복합형식도 24.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상도 역시 주변의 어떤 특정층을 설정해서 관찰하고 기록하겠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다양한 대상층을 설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선정 현황은 40.3%가 비수도권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 마지막 표를 보시면 각 지역별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고요. 선정된 결과도 있어서 자료의 양이 많은데요. 충분히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의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담당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보고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

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열 위원 : 지원결정 현황을 보면 문학 같은 경우는 66.1% 정도가 선정이 되었는데 공연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10.8%밖에 되지가 않아서 제가 의아하게 봤더니만 신청건수 당 신청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돈에 맞추다보니까 채택되신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그냥 액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액수나 건수 하나만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하지 않았고요. 신청건수와 비율을 합쳐서 평균값을 산출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문학 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20억 규모고 문학 분야는 상당수가 개인 참여자가 많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연 쪽은 개인보다 팀 단위로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서 편차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께서 추가 의견을 주셨는데요.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각 장르별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다원 분야에 대해서는 박경주 위원 본인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유은선 위원 : 다원예술 장르 심의위원을 박경주 위원이 추천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안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건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경주 위원께서 위원회 때 의견을 주신 게 각 분야별로 다원 또는 융복합 성격의 프로젝트를 하시는 예술가들이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해당 장르의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다원이나 융복합 성격의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장르가 혼용된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포함해서 추천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그 결과로 구성된 것이 심의위원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명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담당 부장님의 보고가 있었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저희가 애초에 계획하기로 11월 말까지는 무조건 심의를 마치고 결정해서 공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신청건수도 많아서 마음을 졸였습니다만 어쨌든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나서 선정단체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오리엔테이션도 공간을 잡아서 오셔서 의견을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라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부신청과 교부를 진행하고요. 저희가 교부하는 과정에서는 각 단체들 개인들과 약정을 체결해서 저작권 관련된 것과 향후

활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2월까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들었습니다. 추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으시면 이 사안을 접수 받을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첫 번째 보고사항은 일단 접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소위원회와 TF 개최 결과보고인데요. 지금 정책혁신부장이 나주에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소위원장님께서 직접 핵심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부터 간단하게 소위원장님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예, 정책혁신 소위원회 회의 결과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참여를 안 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전체 흐름만 공유를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매회 보고를 드린 것처럼 3개의 워킹그룹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술융합 관련된 공청회도 잘 진행이 되었고 연구결과도 평가가 좋은 상황이고 최종 마무리를 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현재성 관련된 것은 설문조사나 참여하는 외부 위원님들이 워킹그룹에서 작업을 하고 계셔서 조만간 제안서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도 매월 해 왔던 것들도 이틀 전에 녹색전환연구소와 같이 현장 포럼을 했고 환경 쪽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예술현장도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3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12월에 위원님들과 모여서 워크숍을 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1월에 정책보고서 형태로 만들면서 사회적으로 발표하는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 외에 위원회에서 소위에 주셨던 미션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심의제도와 관련된 것은 총괄부와 저희가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어제 한번 더 회의를 해서 단기, 중장기, 현장소통과 관련한 것 등 3가지로 정리해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 최종 상정해서 위원님들과 토론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일단 소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는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보고 받고 함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홍태림 위원께서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예. 현장소통 소위원회 32차, 33차 회의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책제안과 관련한 안건들이 주요하게 4가지 정도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공연예술제와 관련해서 간접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고 조만간 답변이 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레퍼토리 사업을 공연예술중장기 사업으로 합친 것에 대한 문의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게 진행된 과정들을 부서나 현소위 하고도 충분히 상의된 내용을 질의해 주신 분에게 답변을 달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술위 문예지 사업에서의 저작권 보호방안과 다원예술 지원사업 정상화 촉구 제안은 서면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진행되는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현장소위 쪽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의 과제와 아르코의 현장소통 구조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그리고 기초예술의 의미와 범주 세션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밑 준비는 막바지에 이른 상황입니다. 더불어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에 나주에 있는 예술위 본청에서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3기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도 정리를 해야 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정리해서 워크숍 때 발제하기 위한 내부 워킹그룹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추후 현소위가 끝나기 전에 백서도 만들어서 7기 위원회 사무처에도 공유하고 새로 들어설 8기 위원회에도 전달해서 현소위가 앞으로도 잘 운영되고 현재보다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간략히 받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연이어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이진희 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2차례 진행한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27일자 회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간단히 구두로 말씀드렸는데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인데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잠시 후에 규정 관련한 자문회의 진행 결과보고에서도 덧붙여서 말씀드릴 텐데요. 성소위에서 검토한 핵심적인 의견 중에 규정의 제정 배경과 처리절차 쟁점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규정에 대한 논의가 조사권이라는 쟁점 하나를 진행을 묶어두고 있는 상황, 고착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소위의 판단도 그러하고 이후 진행되는 자문회의의 판단도 그러하고요. 규정 마련의 목적이 처벌 중심의 징계가 아니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술위의 입장과 원칙을 마련하는 시작점이라는데 공히 동의하고 계시고요. 성소위에서도 이런 예술위의 원칙과 입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우려하고 있는 조사권과 관련해서 제재와 권고에 대한 것. 58페이지 하단에 18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 관련된 사항들이 열거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소위가 먼저 앞서서 예술현장의 창작환경을 예술위가 규율하거나 엄벌하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제재를 하더라도 사업 참여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것. 그리고 사건발생의 시기와 관련한 문제,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조사가 가능한 적정한 시기의 문제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들을 회의록에서 보는 것처럼 제시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은 규정 수정안에 논의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르코 대토론회 세션 주제로 규정 관련한 내용과 성평등 관점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에 대한 2가지 주제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대 여성예술인 진입 불평등 구조 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그 내용에서 연구 개념 설정에 대한 것과 인터뷰 대상 설정에 대한 논의들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역시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소위원회 운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은 현재 위원회에 신설되는 것이고 위원회 의결구조로 가는 기본규정 고충처리 규정은 운영규정과 기본규정이 있다면 기본규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절차는 안이 마련되면 위원회 내부의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안 마련을 이진희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부분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입장과 원칙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는 바고요.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사를 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을 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규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흐름에 있어서 원칙과 입장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12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진희 위원 : 죄송한데 지금 규정 논의를 하는 것인가요? 안건과 무관한 것 같아서요. 아니면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면 하고요.

박종관 위원장 : 대략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이진희 위원 : 그러면 자문회의 의견을 들을 때 하는 게 맥락에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네, 위원님.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저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법률자문으로부터 공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다음에 누가 조사를 해서 판단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제재 부분은 행정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고 하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규정화 되었을 때 조사를 하고 판단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소관 본부장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희 위원 : 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조사권 문제가 규정 쟁점의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사권은 조정할 수 있어요.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이면 이 규정 초안을 만드신 TF의 연구진들도 “조정안을 달라.”라고 계속 지원총괄부에 요청을 드린 것이잖아요. 지금은 가장 담을 수 있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행 관련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최선의 조치들을 담은 규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실제 예술위가 활용 가능하고 원칙으로서, 실무선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들한테 검토해 달라고 복잡하게 운영되고 원칙 없이 결정되는 것도 많아요. Y 사건도 불안정한 원칙 속에서 위원 의결로 해결했던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술위가 정말 실효성 있게 쓸 수 있을지 검토안을 만들자. 그러니까 검토안을 달라는 게 요청이었지 조사권 문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해요.

박종관 위원장 : 현장 자문위원회 결과를 지금 연이어 보고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

게 하고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진희 위원 : 제 생각에는 오늘 길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규정을 보고 오셔야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정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오늘 보고만이라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이진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오늘 규정 부분을 띄워놓지 않았고요. 예전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충분하게 못 보셨으면 따라잡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원총괄부가 별도로 현장 자문위원회 결과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위원님께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전체위원회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은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진희 위원 :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보고를 다 하고 마지막에 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다른 보고를 모두 마치고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대응TF 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연이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코로나19대응TF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대응TF는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다가 무산되면서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활동 방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었고요. 12월에 진행하는 아르코 현장대토론회의 담당 세션을 계획하는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회의를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토론회 때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예술지원 정책 방향이라는 세션명을 가지고 2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텍스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제1,2,3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정정숙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차 준비회의를 거쳐서 지금 1, 2, 3차 본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TF명 그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 중에서 4개의 과제를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의 이행협치단과 다음 주에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동안 저희가 검토한 내용들 그리고 이행협치단이 그동안 추진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고요. 그 4개의 과제 중에서 기금안정화와 관련된 과제는 기조부와 상의해서 12월 중으로 재정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한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은 회복과 관련된 것인데요. 회복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내부 사무처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내용을 요약하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혁신과제들을 정리할 때 사무처의 각 부서에 내용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내부에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할당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는지는 다음 전체회의 때 보고를 듣기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한 사항은 기획조정부가 준비하여 다음번 간담회 또는 위원회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각 본부별 그리고 소속 부서별 업무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과제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2차, 3차, 청년예술 TF 회의 개최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청년예술 TF 2차, 3차 내용을 종합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TF에서 2022년 3~4월에 진행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네트워크 프로젝트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아르코 23개 혁신과제 중에서 잘 진행이 되지 못했던 예술인캠프 과제를 저희 청년예술 의제와 연동해서 미래예술캠프 사업으로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3~4월 중에 어떤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2박 3일의 일정으로 전국의 청년예술가 150명 내외를 초대하고요. 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예술 생태계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워크숍, 지역과 생태를 체험할 수 프로그램, 지역민과 함께 하는 워크숍, 네트워킹 파티 및 공연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예술 10대 선언을 발표하는 것까지 추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 국회 시즌이기도 해서 논의가 나온 김에 국회 문광위 쪽과 이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1월 8일 유정주 의원실을 찾아가서 2022년 소위원회 예산을 증액할 때 이런 미래예술캠프가 연동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러 갔습니다. 저희 청년TF가 제안한 청년예술캠프가 이 논의를 하고 나서 급물살을 타게 되어 국회 증액으로 예술위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되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현재 상황으로 문예진흥기금에 당초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5억 정

도..... 소위원회 예산이 아니라 예술인력육성 내역사업인 차세대예술인력사업에 편제해서 가용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조만간 예결위가 진행될 때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영이 되더라도 많이 감액될 수가 있는데요. 아마 12월 3일 정도에는 향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게 위원회와 사무처와 충분한 공유가 되고 이 안에서 수기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어야 하지만 11월 8일에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국회 쪽과 얘기한 것이 갑자기 진도가 빨리 빠지는 바람에 저희 사무처와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 11월 간담회 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상 일찍 나가서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못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 TF가 국회 문광위에 11월이나 12월 초에 저희 TF와 국회 문체위 간에 청년예술의제 관련해서 1시간 정도 토론회는 아니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갑자기 진행이 돼서 11월 23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국회 문광위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야당 쪽에서는 따로 응답이 없어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문광위 의원님들과 문체부의 분들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청년예술정책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예술정책과장님도 오셔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집도 있고 아마 아르코광장에는 자료가 공유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광장에 안 들어가셨으면 못 보셨을 수 있어서 이것은 제가 따로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3개의 소위원회 활동과 3개의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총괄하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이나 상호 논의 등을 진행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으니까 잠시 쉬셨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오늘 쟁점 논의를 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사항을 추가한 것은 2주 전에 진행한 회의인데 오늘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참여자는 현장예술인 3인께서 함께 해 주셨고요. 주요한 내용은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규정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고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참조한 규정이라는 것과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폭넓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소개해 드렸고요. 현재 예술위의 임직원 대상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 감사실이고 지원사업과 관련한 것은 지원총괄부에서 다뤄야 하는 업무이죠. 그래서 임직원 대상 규정과 별도로 만들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무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무처에서도 임직원 대상 규정과 별도로 처리 가능한 규정이 필요하여 지원총괄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규정한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맥락을 설명했고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도라는 것은 회사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징계와 조사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인권위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제대로 처리를 안 했을 때나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입니다. 현재 작업한 규정은 예술위가 개별 예술인 사안에 접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예술단체가,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예술단체가 조사를 하거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 할 때, 단체의 대표가 조치하지 않았거나 대표가 가해자일 때, 조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왜냐하면 단체의 장인 대표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고 오히려 가해자이거나 2차 가해에 가담하고 있을 때는 호소할 수 있는 적절한 창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관련성이 상당히 폭넓기 때문에 예술위가 직접 조사하고 심의를 하며 징계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규정안의 기본구조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술위가 가장 우려하고 방어하는 지점은 선정단체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술위 임직원이 아닌 개별 예술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가? “임직원이 개별 예술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무처에서 이 조사를 고충상담관이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사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조치인 제재와 징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원금 선정을 취소한다거나 아르코 공간 사용을 제한한다는 등 상당히 폭넓게 제재 조치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우려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앞서서 강경하게 입장을 이야기 한 것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상위법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행정상의 리스크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왜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느냐?”, “규정 마련의 목표가 예술위 안에서 명확하게 합의될 필요가 있다.” 이 첫 번째 논의가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규정이 조사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우려하는 조사권이라는 것은 형사적 조사권에 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큰데요. 우리가 사실 상담활동 등을 해 보신 분이 드물어서 조사라는 것이 사법적인 권한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하는 것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성폭력 상담을 지원할 때 상담하는 상담원이 당사자나 당사자 주변인 등 사건의 실체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전체의 과정을 조사의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조사의 성격을 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는 예술위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술위가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요. 심판하는 갑의 위치가 아니라 매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 예술위 자체적으로 행정

집행자로서 징벌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실 조사권에 대한 수위와 강도에 대해서 현장이 기대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술위가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징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함께 환경을 바꾸고 체질개선 작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규정의 핵심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예술인들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술위 내부의 교육이 필요하다.” 성폭력·성희롱 발생 구조와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조사의 의미와 재발방지 구축을 위한 활동이 무엇이고 사업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의 목표에 대해 현장에서는, 아까 성평등 소위에서도 그랬고 현장예술인도 그렇고요. 11월 23일에 관련 기관의 분들과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어요. 이것만 정리하고 그 회의록은 아직 정리 중인데요. 여성인권진흥원이라든가 영화계 성평등센터 등 선생님도 공히 하는 말이 “조사를 통해서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뭘 못하게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조사권만이 이 규정의 전체가 아니고 성평등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권에 국한하지 않고 논의를 예술위에서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관련 기관 협의에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사권 상태에서 고착 상태인 지금의 논의를 저도 뚫고 가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의견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조사권에 대한 것을 계속 쟁점으로 잡으면 규정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은 상위법의 정돈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런 맥락 속에서 현장에서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세부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고충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것,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해서 뭐가 규정에서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쟁점 파악은 이미 현장에서는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충심의위원 같은 경우도 구성을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성한 위원들이 가해자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기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 고충처리 기관과 절차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실 피신고인이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동시에 같이 소명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동시에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피해자 이의제기 절차와 신고기관 등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6~7장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셨다는 것을 공유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원재 위원님께서 규정 관련한 안건으로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떠냐는 안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잡는 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제가 오늘 이 보고사항을 오늘 논의 때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구성원은 잘못이 없는데 가해자 때문에 해당 단체의 예술인들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징계를 받은 단체에게 시드머니 개념으로 다양한 지원방법을 고려하는 것을 예술위가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은 징계와는 다른 다양한 측면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규정안 하나를 현장에 제시했을 때 현장이 가지는 고민의 스펙트럼이 예술위보

다 더 넓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부끄러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그 워크숍에서 논의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쟁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저는 가장 큰 쟁점은 “규정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진희 위원이 혼자 와서 “이것은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주장해서 어쩔 수 없이 TF를 만들고 어쩔 수 없이 규정안을 만들고, 그런데 보니까 조사권 때문에 통과는 안 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위가 약속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 마련의 목표에 대해서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권 말고 쟁점이 많아요. 그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사무처에서 검토해 주신 조사권 관련한 쟁점을 논의 의제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외는 살펴보시면서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를 미리 주시면 안건에 대한 정리는 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제안을 할 것이고요. 저의 제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논의를 하자.”, “논의를 진척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의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쉽게 의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결을 주장했는데요. 의결은 더 신중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술위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나 과정이 확보되어야 하니까요. 다만, 논의를 진척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접수하기 전에 홍태림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권과 관련된 쟁점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이 규정안이 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중심축을 자꾸 빼버리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규정안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Y작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한 조사와 정보수집, 어떻게 보면 정보수집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권리보장위원회 같은 것들이 정식으로 출범되면..... 권리보장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체계화 할 것인가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권리보장위원회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에게 사건 접수가 되면 1차로 저희가 정보수집을 한 내용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은 있고 그것이 저희 안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권리보장위원회에 이관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투트랙으로 진행해 보면 풀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저는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지만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규정이라는 것도 저는 본질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가

야지 현장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임의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르마 타는 워크숍을 하자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이것을 숙지하고, 아마 이진희 위원님이나 소위에서는 좀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 끌지 말고 그냥 빨리 쟁점을, 빨리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논의할 만큼 저는 논의를 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진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사무처에서 조사권 외에 전반적인 규정안을 진행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권이 쟁점이라면 그것을 놓고 토론하든지 해서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의견을 주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위원회가 논의하고 위원들이 인지하고 결정할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의했고 규정안을 연내에 만들자는 겁니다. 서두르자는 것이 아니라 논의된 것 중에 결정이 가능한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쟁점이 되어 합의가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본 전제는 이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노력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위원회의 여러 상황 상 일단 규정안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못 만든다면 정확한 쟁점들을 가지고 따로 논의하거나 보완하자는 제안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시 요약하면 워크숍에서 진행이 가능한가?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원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논의의 내용은 쟁점이어야 한다. 그리고 총괄하여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것이지 당장 어떤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는 오늘 논의에서는 더 이상 진전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처 쪽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원재 위원 :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위원회가 가장 안 될 때 큰 단점이 뭐냐 하면 논의가 표류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정할 때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논의의 타이밍과 시간과 힘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쟁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 Y사건 때 결정한 것과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결정들이 진행되어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조사권만 문제라면 그 부분만 논의를 하더라도 오늘이 아니라도 결정할 것은 결정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처가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진행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소위의 위원님들이나 이진희 위원님이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결정하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서 그것은 따로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시키자는 겁니다. 계속 여기에 상정된다고 해도 지치거나 표류되기만 하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대토론회 의제로 하자는 것은 이견이 없지 않겠습니까?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처 내에서는 제정이고요. 규정을 제정할 때는 내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규정제정심의회의를 해야 하는데요. 물론 사무처의 일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처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기본규정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논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필요하시면 토론을 하셔서 의결사항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번에 지원총괄부장이 새로 온 만큼, 물론 다원하고 아동하고 내년 사업을 전혀 진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적인 여유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하고 얘기를 해서 안을 마련하고 규정제정심의위원회 내부의 의견까지 조율을 한 다음에 쟁점사항과 종합적인 부분으로 해서 진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무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토론이 필요하시면 토론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원회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희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려 의견으로 제시된 것이 규정제정위원회를 통한 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규정제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듣기는 했거든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저희들이 3군데 법률자문이 완료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법률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기간은 오래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사무처의 의견이 아니라 변호사의 자문의견을 받아서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서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데요. 지난번 논의를 보면서 느낀 것이 법률자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사결정은 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놀랐던 것은 기계적인 형평성입니다. 가해자를 방어하는 로펌한테 자문을 받아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늘 비판을 했던 전형적인 관료주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성폭력 문제의 가해자를 보호했던 로펌의 의견을 균형감 있다고 사무처가 설명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그 부분은 법률적인 식견이 없거나 자격이 없으면 저희는 그 말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쪽과 저쪽 그리고 중간적인 입장 등 3가지 의견을 들었고요. 공통된 의견 중에 핵심사항인 조사나 판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율해 나가면서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조사나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히 의견이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의 규정개정을 할 때, 그리고 나중에 쟁점사항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성소위에서 만들어서 사무처에 제공했던 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무처의 규정제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고 의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수정의결을 하건 그냥 통과시키는 의결을 하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진희 위원께서는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원재 위원께서도 워크숍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으나 지금 현재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만 가지고도 이미 규정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이 되었

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도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사권과 판단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조사권에 대해서 규정제정위원회에서 의견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 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받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여기까지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남요원 감사 :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번 이진희 위원님께서 주셨던 고충처리위원회 방안은 원안입니까? 아니면 이진희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3번에 걸쳐서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아마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방어권 정도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 단체가 조사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대표자 한 사람의 실수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스톱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참여자의 피해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제안하셨던 그 규정안이 조금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진희 위원님이 성소위를 중심으로 그 규정안을 수정해서 사무행정으로 넘겨주시고요. 행정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밟는 규정 절차가 있으니까요. 규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고 그 규정 절차에 의해서 행정에서 제안되어지는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을 받으셔서 위원님들 안에서 논의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감사님의 의견은 감사한데요. 지금 규정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져야 할 것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은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장 최종안은 성소위의 위원장님께서 사무처의 송 본부장님께 전달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요원 감사 : 이진희 위원님, 그 안을 가지고도 진행해도 충분합니까?

이진희 위원 : 충분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안은 현재 상황에서 관련된 기관이나 관련된 지침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 그러니까 징계도 가장 엄격하게 다룬 지침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징계수위를 조절할 것인가는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희 위원 :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해서 다시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징계수위는 한꺼번에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요원 감사 : 왜 그러냐 하면 절차적으로 규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규정은 모든 게 감사트랙의 일감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감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의견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는 송시경 본부장이 그냥 단순하게 조사권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어적이다.” 저는 방어적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규정을 정비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 담고 있는 취지와 합리성을 담아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행정적으로 보완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보완할 지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조사권 안에, 예를 들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관점이 있고요. 진술을 해야 될 가해자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규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이 규정은 논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9월 25일에 법이 시행되어지면 그때 가서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에 대한 논의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내용이 문제죠. 내용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고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다뤄야 할 것인지가 문제죠. 그래서 아무튼 이 규정안을 나는 이진희 위원께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으로 넘어와 있는 규정안 자체가 지금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의시키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일감범위 안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감사의견을 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행정이 이 논의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불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예술진흥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규정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 감사합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무처에서 방해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소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주셔서 제정을 함에 있어서 뼈대를 다 만들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3군데에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예술인의 성희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3군데 공히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인데요.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미 자문을 받은 게 있고 자문의 수위가 판단하고 조사 말고는,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변호사는 “모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두 번째로 “5년이든 10년이든”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앞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9월에 시행되게 되면 법규와 령으로 다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는 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해 놓고 그때 가서 위법하면 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규정제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핵심이 있으면 보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요. 이후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정비되어 여기와 배척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재의 정도도 권리남용인지 아닌지는 깊숙이 들어가면 정말 전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명확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요원 감사 : 제가 감사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성소위에서 논의된 자료와 현재 행정에서 검토했던 법률자문 일체의 서류를 저희 감사실로 넘겨주십시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렇게 해서 7개의 보고안건과 1개를 더한 8개의 보고안건을 모두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모든 의결사항과 모든 보고사항을 마쳤고요. 차기 위원회 회의는 지난 달 위원회 때 결정한 대로 29일로 예정하여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안을 의결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미리 약속한 대로 9일에서 16일로 연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9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주신 덕에 오늘 회의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1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종료)